

**제 2430호**  
**2016. 02. 11**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 
 편집인: 공 보 실 장 장 운 기  
 전화: 3396-4965  
 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선	기관의장
람	

# 구 보

● 고 시

제2016-13호 : 장교역제지구도환경사업공원료고시..... 2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  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  
 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65 / FAX.(02)3396-9024  
 ● 구보는 수시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												
람												



고 시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6-13호

###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

건설부고시 제368호(1973.9.6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32호(2007.5.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58호(2010.12.16.),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1-57호(2011.9.8.) 및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4-34호(2014.5.1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2-75호(2012.8.1.),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2-110호(2012.12.5.),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4-13호(2014.2.19.),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4-110호(2014.12.17.),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5-83호(2015.10.21.) 및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5-116호(2015.12.30.)로 사업시행 인가(변경)된 우리구 을지로2가 88-5번지 일대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인가 신청서가 제출(2016.1.15.)되어 관련기관(부서) 협의결과 사업시행인가 내용대로 완료되었기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8조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고시합니다.

2016년 2월 11일  
서울특별시중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
  2. 정비사업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88-5번지 일대
 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   - 성 명 : 센트럴장교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해란
    - 주 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(수송동, 대림빌딩12층)
  4. 정비사업 준공인가 내역
- 가. 토 지

시행면적(㎡)	대지면적(㎡)	정비기반시설(㎡)			비고
		합계	도로		
			광로(3-8)	소로(2-1)	
2,174.4	1,978.0	196.4	97.7	98.7	

나. 건축개요

구 분	규 모	비 고
건축면적	1,151.94㎡	건폐율 : 58.24%
연 면 적	30,833.48㎡	용적률 : 992.25%
층 수	지상22층, 지하7층	높 이 : 99.65m
용 도	업무시설(업무시설, 근린생활시설)	※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지정

5. 도시계획시설(철도:정거장)사업 완료 내역

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구분						비고 (해수면 기준)
			평면면적 (㎡)	입체면적 (㎡)	길이 (m)	폭 (m)	높이 (m, 지하)	최초 결정일	
철도	도시철도(2호선) 을지로2가 정거장 [지하연결통로]	을지로2가 88-5일대	177.9	1,144.51	43.0	5.0	31.3~16.1 (해수면기준)	'77.12.1 (건교제232호)	- 엘리베이터 부분 (16.1m~31.3m) - 에스컬레이터, 계단부 부분(19.6m~29.9m) - 연결부 부분 (20.8m~25.4m)
세부 사항	○ 입체적 결정범위(을지로변 출입시설 일부) - 지상 1층 : A=177.9㎡, H = 31.3m~27.0m(해수면기준) - 지하 1층 : A=177.9㎡, H = 27.0m~16.1m(해수면기준)								

※ 철도(정거장) 시설면적 9,966.8㎡중 506.27㎡에 대하여 출입구 이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, 상기 면적은 입체결정된 범위내 시설사업 현황임

6.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2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시 의제 처리된 각 개별법에 정하여진 신고 또는 허가사항은 같은법 제53조에 따라 본 공사 완료 고시에 의거 준공 의제처리 됨.

7. 관련도서 : 생략(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3396-5773) 비치도서와 같음)